

보도시점

2026. 3. 26.(목) 11:00  
3. 27.(금) 조간

배포

2026. 3. 26.(목) 09:00

## 올바른 반려문화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

- 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및 일반국민 행동수칙 안내 영상 배포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‘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’를 배포\*했다고 밝혔다.

\*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·SNS, 동물사랑배움터(<https://www.apms.epis.or.kr>)

이번 홍보영상은 ‘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’ 홍보물(포스터·리후렛)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.

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, 목줄(가슴줄) 착용,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.

한편, 농식품부는 반려인-비반려인 준수사항,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 요령,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‘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’ 홍보물 7만부를 배포하였고,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.

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“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.”며, “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농식품부	동물복지환경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연숙 (044-201-2611)
		담당자	연구관	조승열 (044-201-2626)

###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



### 기본을 지키면 일상이 평온해집니다



###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

물고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



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 
오늘의 실천이 모두의 안전

###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꿀팁

유기견 신고입양등 상담

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
1577-0954

유기동물 정보

국기동물보호정보시스템  
animal.go.kr

동물보호복지 관련 교육

동물사랑배움터  
apms.epis.or.kr

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

# 반려생활 가이드

## 반려견 준수사항

###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

#### 입양·출생·변경관리 법 제16조

-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**동물등록**을 해야 해요.
- 사망·주소변경 등 **변경등록**도 꼭 해야 해요.
- \* 사군 구청 또는 등록대행업체

미등록 | 1차 20만원, 2차 40만원, 3차 이상 60만원  
 변경등록 미이행 | 1차 10만원, 2차 20만원, 3차 이상 40만원

#### 외출관리 법 제16조, 제21조

- 안전사고·분실 예방을 위해 **목줄(가슴줄) 및 인식표**를 착용해 주세요.

목줄 미착용 | 1차 20만원, 2차 30만원, 3차 이상 50만원  
 인식표 미착용 | 1차 5만원, 2차 10만원, 3차 이상 20만원  
 맹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| 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이상 300만원

- 공용공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을 **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.**

안전조치 미이행 | 1차 20만원, 2차 30만원, 3차 이상 50만원

- 배변봉투**를 챙겨주세요.

반려견의 배설물이 생기면 **반드시 수거**해 주세요.

배설물 미수거 | 1차 5만원, 2차 7만원, 3차 이상 10만원

#### 거주관리

- 아파트 등 집안에서 반려견이 **과도하게 짖지 않도록** 해 주세요. 소음으로 이웃 주민이 힘들 수 있어요.

###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

#### 개물림 사고 유발행위 저지

- 모르는 반려견에 대해 **'눈을 뺀히 응시하기'**, **'갑자기 다가가기'** 및 **'소리 지르기'** 등 공격성을 자극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을 주의하세요.
- \* 들개·낯선 개 대응방법 참조

#### 반려견 및 소유자에 대한 예절 준수

- 반려견을 만지기 전에 **소유자의 허락**을 받아야 해요.
- 반려견을 만질 때는 반려견이 놀라지 않게 **천천히** 다가가서 **부드럽고 일정한 압력**으로 만지세요.
- 해당 반려견을 처음 만질 때는 사고 예방을 위해 **머리는 피하세요.**
- 반려견 마다 선호부위와 민감도가 다르므로 **반응을 살피며 교감**하는 것이 좋아요.

#### 안전 사고예방

- 소유자의 허락없이 반려견에게 먹이를 함부로 주면 안 돼요. **물에 맞지 않는 음식**을 먹으면 위험해요. (초콜릿, 양파종독 등)

## 맹견 준수사항

#### 사육허가 법 제18조

- 맹견(검종포함)은 사·도지사에게 **사육허가**를 받아야 해요.



\* 허가요건: 동물등록, 책임보험가입,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 등 (무허가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)

#### 외출관리 법 제18조, 제21조

- 목줄·인식표·입마개를 반드시 착용\*하거나, **탈출 방지 이동장치\*\***를 사용해 주세요.
- \* 반려인 준수사항 참조 \*\* 견고한 재질, 점침장치 등

#### 출입금지장소

-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시설 등

#### 거주관리 법 제21조

- 탈출 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세요.
- 사육하는 곳에 **경고문\***을 표시해 주세요.
- \* (12) 맹견주의 (22) 접근금지(맹견 사육 중) (32) 개소심(맹견 사육 중)

#### 교육·보험 법 제18조, 제23조

- 맹견 소유자 등은 **책임보험**에 가입해야 하고,
- 사육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**신규 보수교육**을 이수해야 해요.
- \* 동물사랑배움터(<https://apms.epis.or.kr>) 참조

##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

#### 들개·낯선 개 대응방법

##### 들개·낯선 개를 만났을 때

- 눈을 마주치지 말아주세요.
- 천천히 뒷걸음질로 물러나며 거리를 두세요.
- 몸을 비스듬히 옆으로 해서 개와 마주하세요.

-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큰소리를 내지 말아주세요.
- 등은 절대 보이면 안 돼요.
- 개가 그냥 지나가거나 물러나기를 기다리세요.

##### 들개·낯선 개가 공격할 때

- 지갑·기방·옷 등을 이용해서 개와의 사이를 가로막아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아주세요.

- 넘어졌을 경우, 고개를 숙여 목을 감추고 귀와 목을 손으로 감싼 후 땅에 엎드리세요. (경동맥 보호)

#### 개물림사고 대응방법

- (응급처치)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즉시 비누와 물로 상처를 씻고 **의료기관을 방문**하세요. (응급 시 119 이용)

특히, 상처가 심한 경우, 상처가 붉고 아프고 열감이 있고 붓는 경우, 파상풍 접종 후 6년이 경과하였고 물린 상처가 깊은 경우

- (병원치료) 의사 진료 시 파상풍·공수병 예방접종 등 적절한 치료를 위해 사고건의 **광견병 예방접종 여부**·시기 등 **필요한 정보**를 소유자에게 꼭 확인하세요. \* (신고·문의) 경찰서(112),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등

#### 기타안내

- (상담) 유기견 신고·입양, 동물보호 법령 및 교육 등은 **동물보호·복지 상담센터(1577-0954)**에 문의하세요.
- (유기견) 자세한 유기견 정보는 **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<https://www.animal.go.kr>)**에서 확인할 수 있고,
- (교육) **동물사랑배움터(<https://apms.epis.or.kr>)**에서 동물보호·복지 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요.

## 농촌(아외)지역 반려견 관리

#### 실외사육견이란?

- 농촌지역 등에서 **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개\***
- \*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, 주택 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

####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 법 제4조

- (목적) 중성화수술을 통한 들개와의 무분별한 번식 억제,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
- (대상) 농촌지역 등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 개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견
- (조건) 중성화수술 및 제반비용(40만원/마리 이내)
- (신청) 지자체(시·군·구) 동물보호·복지 부서

#### 적정사육기준 법 제10조

- (위치)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, 실외사육 시 더위·추위·눈·비·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어야 해요.
- (공간) 동물의 몸길이 기준 가로 2.5배, 세로(교·교리) 2배 이상 공간이 필요하고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으면 안 돼요. \* 땅 등 바닥에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 X
- (기타) 줄로 묶어서 사육 시 길이는 2m 이상 유지하고,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면 안 돼요.